

SAFETY WEEK

2021 울산안전산업위크

5.12^{Wed} ~ 14^{Fri}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참가신청서

Ulsan Safety Week 2021 사무국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6, 205호 (우:44730)

Tel. 052)255-1832 / Fax. 052)269-8730 / E-mail. help@safetyweek.co.kr

1. 참가업체 정보

업 체 명	(국문)	홈페이지	
	(영문)	대표전화	
대 표 자 명		F A X	
주 소	(우편번호)		
전시 담당자	성 명	부 서	
	직 위	휴 대 폰	
	전 화	E-mail	
세금계산서 담당자	성 명	휴 대 폰	
	E-mail		
전시 품 목 세 부 기 술			

2. 부스 참가신청 (1부스=3mx3m=9㎡)

구분	단가	신청부스	소계	부가세	합계	비고
독립 부스	1,500,000원/부스	부스	원	원	원	· 전시면적만 제공 ·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조립 부스	1,900,000원/부스	부스	원	원	원	· 전시면적+조립부스

3. 인보이스 발행 및 참가비 납입 안내

- 인보이스(Invoice)는 2021년 1월 4일 이후부터 발행될 예정입니다.
- 계약금(총 참가비의 50%)은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입하셔야 하며, 잔액(50%, VAT포함)은 2021년 3월 31일까지 납입하셔야 합니다.

4. 참가업체 정보이용 안내

참가업체 정보는 전시회 진행 및 차기 전시회 개최 관련 서비스 안내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전시담당자 연락처가 주요 연락처로 사용됩니다.

뒷면의 참가규정을 수락하며, 상기와 같이 2021 울산안전산업위크(Ulsan Safety Week)
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2021 울산안전산업위크(Ulsan Safety Week) 사무국 귀중
(4473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6, 205호
Tel : 052)255-1832 Fax : 052)269-8730 www.safetyweek.co.kr

SAFETY WEEK

2021 울산안전산업위크

5.12^{Wed} ~ 14^{Fri}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참가규정

Ulsan Safety Week 2021 사무국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6, 205호 (우:44730)

Tel. 052)255-1832 / Fax. 052)269-8730 / E-mail. help@safetyweek.co.kr

제1조 용어의 정의

- ① 「전시회」라 함은 "2021 울산안전산업위크(Ulsan Safety Week 2021)"를 의미한다.
- ②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기업, 기관, 협회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제조, 판매, 무역업 등)의 대표자를 의미한다.
- ③ 「전시품」이라 함은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전시품목을 의미하며, 전시자가 제조·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
- ④ 「주관사」라 함은 "울산광역시도시공사"를 의미하며 「전시회 사무국」은 "울산광역시도시공사"내에 설치·운영한다.
- ⑤ 「주관사」가 타 기관으로 변경되어도 본 계약은 승계되며 협약 내용은 유효하다.
- ⑥ 「참가 규정」이라 함은 전시회와 관련해 전시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 ①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21년 1월 4일 이후부터 사무국이 발행하는 인보이스(Invoice)에 의거, 참가비를 납입한다.
- ② 계약금(총 참가비의 50%)은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잔금(VAT포함)은 2021년 3월 31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③ 계약은 전시자가 주관사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날로 부터 성립된다.
- ④ 전시자가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지체한 날로부터 납입일 까지 법정연체료를 적용한 지체가산금을 정산, 납입하여야 한다.
- ④ 주관사는 전시장 면적이 소진되었거나 참가신청서 상 전시품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조 전시품 규정

- ①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한 경우 주관사는 이를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전시자는 합법적인 협력관계 혹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불법적인 제품이나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제품도 전시할 수 없다.
- ③ 전시자는 전시회 기간 중에 판매된 전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 부스의 배정

- ① 부스 배정은 부스 참가규모(전시면적), 계약일자, 전시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관사가 결정하며 전시자는 부스 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전시면적은 전시자에게만 사용이 허용되며 전시자는 배정받은 전시면적을 주관사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분할, 교환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준하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관사는 전시자의 참가를 취소할 수 있고 전시자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제5조 전시회 취소 및 변경

- ① 주관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태풍, 홍수, 지진, 화재, 질병으로 인한 특정지역 봉쇄(또는 폐쇄), 전시장 파손 또는 붕괴, 전시회 또는 집회 등에 관한 정부의 집합 금지 권고 등)으로 인해 전시자 또는 방문객의 참가가 불가능하거나 전시장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주관사는 전시회를 취소 또는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상기 ①항의 사유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면적과 전시자가 기납입한 참가비에 대한 권리는 주관사에게 귀속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 ① 전시자가 일방적으로 부스 수를 축소하거나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배정된 부스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참가비를 사무국이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고 기 납입된 참가비는 아래 표와 같이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위약금은 세금계산서 미발행)

참가 취소(또는 축소) 시기	위약금액
2020. 12. 31.(목) 이전 취소 시	-
2021. 3. 31.(수) 이전 취소 시	참가비의 50%
2021. 4. 1.(목) ~ 5. 9.(일) 취소 시	참가비의 80%

- ② 전시회 설치공사가 시작되는 2021년 5월 10일(월) 이후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7조 배상의 책임

- ① 주관사는 전시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 ② 전시물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으며 주관사는 전시물품의 분실, 파손, 화재 등으로 인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전시자는 전시기간(설치 및 철거기간 포함) 중 전시장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난이나 화재, 재산손실, 상해, 제3자 손실, 사고, 재난(재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전시회 연기, 조기 폐막 및 취소 등에 대비해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로 인한 결과에 대해 주관사에게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
- ④ 전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한 타 전시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 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 전시장 운영

- ① 전시장 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 ② 전시자는 전시장 사용시간 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시간의 사용료를 주관사에게 추가 납입하여야 한다.
- ③ 조립부스는 주관사가 제공하는 형태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관사 서면 승인 없이 상호 간판과 글자를 포함한 기본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전시품 및 시설물을 주관사의 사전 승인 없이 기본 구조물 높이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 ④ 전시자는 행사 폐막 이전에 주관사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으며, 폐막 후 주관사가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모든 전시품 및 관련 물품 일체를 전시면적에서 자체 경비로 철거해야 하며, 전시면적은 처음 배정받은 당시의 깨끗한 상태로 반납되어야 한다. (잔존물이 있을 경우 1루베(㎡)당 300,000원(vat별도)청구)
- ⑤ 주관사는 전시자가 동 참가규정과 전시장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시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중량률 제한

전시장 지반구조에 따라 전시품의 중량률이 제한되며, 1개의 전시품이 1㎡당 3ton 이상일 경우와 총중량률이 5ton 이상일 경우에는 주관사와 사전협의 후 승인을 거쳐 반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품의 실연

- ① 전시자의 장치, 가구 배치, 제품 전시, 상담, 시연 및 홍보 활동은 배정된 전시면적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벗어날 수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위험물품을 전시면적 내에 보관할 수 없다.
- ② 전시품의 실연은 인체·재물에 대한 안전과 타 전시자 및 관람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연해야 한다.
- ③ 주관사는 실연의 안전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실연을 제한 또는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
- ④ 전시자는 음향장비나 벨 등 소음을 유발하는 장치 및 설비의 사용으로 다른 전시자 및 방문객에게 피해를 줄 경우 주관사의 조치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

제11조 방화규정

- ① 전시자는 전시장의 모든 소방, 전기 및 시설의 안전 등에 관한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 및 설치물, 장치물 등은 소방 및 안전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방염 및 불연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③ 주관사는 필요에 따라 화재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시정을 전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개정 및 준수

- ①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을 개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주관사가 정한 보충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로 간주되며 전시자에게 효력을 미친다.
- ② 전시자는 주관사 및 전시장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 사항

- ① 전시회와 관련된 문제 중 동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사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부산 소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판결에 따라야 하며, 당해 중재판정을 최종으로 한다.

위 참가규정을 모두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대표자(신청자) :

(인)